

羅城 東部 韓人會

회 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본회는 羅城 L.A.동부한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 제 2 조 본회는 회원간의 상호 상부상조 친목을 도모하여 우리 교포권익을 옹호하며 自立 自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1.5世, 2世, 3世의 미국 국가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事業을 하여 교포 社會發展을 도모한다.
- 제 3 조 본회의 사무소는 L.A.동부지역에 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지역별 분회를 둘수 있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 제 4 조 본회 회원은 L.A.동부지역 및 근교에 거주하는 한민족 핏줄을 ~~25-50%~~ 가진 18세 이상의 한인 교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제 5 조 본회 회원은 총회의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會則과 總會 決議事項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 6 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을 둘수 있다. 본회의 취지와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者로서 회장단 및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단,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 제 7 조 본회원으로서는 회의 결의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의명예를 손상시킬 시는 이사회 결의에 依하여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의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會員권리는 自動 포기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임기와 임무

- 제 8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1 명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會務일체를 통괄하며 총회와 會議의 議長이 된다.
- 부 회 장 : 약간명(상임 부회장을 둘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업무를 대신한다. 순위는 회장이 考定한다.
- 고 문 : 약간명
본회의 취지사업을 찬성하는 자로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분으로 한다.
- 자문위원 : 定員 없음
본회의 發展과 事業의 同參하는 者로서 地域社會 德望있는 분으로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분으로 한다.

명예회장 : 약간명

본회의 發展事業遂行에 도움을 表할 수 있거나 전임회^장으로서 회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으로 이사회^장의 승인으로서 추대한다.

이 사 : 50명이상

이사는 본회 운영에 참여하여 제반 의사를 결의한다.

이 사 장 : 1 명

이사회^장의 장으로 會務를 遂行한다.

부이사장 : 2 명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代行한다.

各分科委員長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委員會

본회 會務事業추진 교포 社會 奉仕 美政府行政 參與 地域社會發展의 必要한 委員會를 들수 있다.

감 사 : 3 명

감사는 會計를 감사하며 총회의 報告한다. 이사회에 참여하며 결의권은 없다.

事 務 長 : 1 명

사무장은 유급 산근자로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執行한다. 단 임원에 交替와 關係없이 會務를 遂行한다. 任命權은 會務^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企 劃 官 : 약간명

회장의 명에 따라 事業計劃上 必要한 情報와 對政府 支援金 프로그램 作成企劃 支援金 交付받을수 있는 자로서 有給者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 승인받은 자로 한다.

제 9 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一回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도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매년 정원 1/2씩 개선한다.

제10조 본회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다음에 의하여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의 결원이 일년이상 잔여기간이 있을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여야 한다.
2. 부회장, 이사장, 이사 결원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보선하기로 한다.

제11조 본회 임원은 명예 또는 유급으로 ~~할수~~ ^{할수있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가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分科委員會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부의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승인에 관한 건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승인
3. 회칙 개정에 관한 건
4. 임원 선출에 관한 건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결의

나 : 임시총회는 긴급 중요한 안건이 발생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요청이 있을시나 재직회원중 회비를 납부한 회원 2/3이상 요구가 있을 시는 회장은 소집하여야 하며, 요구 안건 외는 회의할 수 없다.

제13조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부의할 안건 심의
2. 본회의 설치 및 분회장의 인준
3. 회비 및 회원 會費부담금의 책정
4. 본회에 공이 있는 자의 표창 및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의 징계 결의
5. 제반 업무시행상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의 제정
6. 총회에서 수입한 사항의 처리
7. 상설 分科委員會설치 인준사항
8. 회장의 외래사무 處理

제14조 총회는 재직회원중 해당 년도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의사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제15조 이사회는 출석이사로서 성립하며 의사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 찬동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사업 및 부서

제16조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둔다. 사무장, 총무, 재무, 홍보, 조직, 계획, 섭외, 동계, 봉사, 사업.

각 부서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본회 사업과 각 부서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장 : 각부서의 事務를 감독수행하며 장기간 직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급직으로 한다.)
2. 총 무 : 서무관리의 관한 사무처리
3. 재 무 : 본회재산관리의 운영 사무처리
4. 홍 보 : 본회 事業수행에 대한 홍보
5. 조 직 : 본회 事業수행에 필요한 조직 사무처리 조직관리
6. 계 획 : 본회의 미래 發展 事業計劃 事業 사무처리의 美政付 支援金 交付金
修交할 수 있는 사무처리 (유급직원으로 한다.)

7. 섭 외 : 본회 對外的인 交渉과 美州내 少數民族間의 우대의 同參할 수 있는 사무처리
8. 동 계 : 본회 회무에 동계와 國內 교포사회 필요한 동계 사무처리
9. 봉 사 : 본회 교민봉사에 관한 계획처리와 사업관리
10. 사 업 : 본회 業務遂行上 필요한 後援金 마련을 할수 있는 事業운영 處理

제18조 본회의 目的을 合理的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각 常設 分科委員會를 둔다.

1. 노인분과위원회 : 노인 복지사업에 관한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2. 청소년분과위원회 : 모든 필요한 청소년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3. 부녀분과위원회 : 부녀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4. 의료분과위원회 : 교포 의료정보와 영세민 구호 의료 ~~관리~~ 사업 수행 사무처리
5. 법률(이명)분과위원회 : 이명 법률 정보 제공과 관리 사업 수행 사무처리
6. 상공분과위원회 : 상공인의 사업 발전 친목 상부상조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7. 체육분과위원회 :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8. 교육분과위원회 : 교포 및 청소년 교육에 관한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9. 정치(시민권자)분과위원회 : 우리의 주권을 갖을 수 있는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10.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 :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11. 타운번영개발분과위원회 : 타운에 理想的이고 合理的이고 未來指向的인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12. 경찰파출소분과위원회 : 타운방법에 관한 경찰 사무의 兪활한 처리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13. 문화분과위원회 : 民族文化 民俗藝術에 관한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14. 직업훈련분과위원회 : 교포 직업알선할 수 있는 훈련에 관한 사업 관리 수행 사무처리
15. 상조분과위원회 : 喪葬기금

제19조 본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하며 그 운영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유급직원을 들수 있다. 직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부당금, 이사회비, 찬조금, 기부금, 정부지원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잠수입금으로 충당한다.(임시 차용금^을 ~~할수~~ 있다.)

제22조 본회 수입금은 회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연명으로 관리하며 지출은 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재무부장이 담당한다.

제23조 본회 회계년도는 미국 정부회계 년도로 한다.

제24조 본회는 가주 정부와 연방정부 법에 의한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로 한다.

제2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통상회의 회칙의 관례에 준한다.

제26조 본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며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정한다.

제27조 본 회칙은 1991년 ¹~~2~~월 ⁴~~5~~일부터 시행한다.